

#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4. 1,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6. 4. 3
- 다. 상정일자 : 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
- 나. 제안이유
  -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보육위원회 업무 담당실과 변경으로 관련규정 개정
- 다. 주요내용
  - 제명변경
    - 현행 :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
    - 개정 :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
  - 보육위원회 간사변경
    - 가정복지과 → 가정복지계장

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담당실과 변경으로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 : 【원안가결】

7. 첨부 :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3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함.

## 2. 주요골자

- 조례제명 및 간사변경
  -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를 화순군 보육위원회로 변경
  - 간사를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

## 3. 관계법령

- 화순군 조례 제 1396 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
- 화순군 규칙 제 825 호 화순군 직제규칙 개정규정

##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"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"를 "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"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"가정복지과장"을 "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명 : <u>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</u></p> <p>제7조 (간사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가정복지과장</u>이 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명 : <u>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</u></p> <p>제7조 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<u>가정복지계장</u> ..... ..... .....</p>